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(안 제2조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